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8
----------	------

발의연월일 : 2025. 3.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나. 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 이라 한다)”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수면 등에 적용한다.

제4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판을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제구역(이하 이 항에서 “기존 구역”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구역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통제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내용 및 설치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통제구역에서 낚시해서는 안된다.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2023.7.25. 타법개정, 2024.1.26.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시”란 낙시대와 낙시줄·낙시바늘 등 도구(이하 “낙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낙시터에서 낙시를 하거나 낙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낙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낙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낙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낙시터업자”란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낙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6조(낙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

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법률)」(2022.1.11. 타법개정, 2023.1.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농어촌정비법(법률)」(2024.12.20.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 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 타법개정·시행)

제4조(낙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낙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 타법개정, 2024.12.27. 시행)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8.8. 타법개정·시행)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안내판 설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4조제3항·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안내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3항·제4항)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